맛의 1번지·남도땀사 1번지 강진

2016년 병영면 종합감사 결과

- 감사기간 : 2016. 3. 9. ~ 3. 11. / 3일간
- 대상기간 : 2014. 3. 1. ~ 2016. 2. 28. / 2년간
- 지적사항 : 15건
  - 시정 8건, 주의 7건
  - 재정상 조치금액 : 3건, 583천 원(회수 356, 부과 227)

강 진 군
【기획홍보실】

보건소 부분감사 결과

1. 처분요구 실적 : 15건

○ 시정 6건, 주의 9건

○ 재정상 조치금액 : 3건, 583천 원(회수 356, 부과 227)

2. 지적사항 목록

(단위 : 건, 천원)

연번	분야	건 명	행정상 조치 (건)		재정상 조치 (천원)			비고
			시정	주의	계	회수	부과	
계		15건	8	7	583	356	227	
1	일반행정	주민자치센터 운영 소홀		○				
2	〃	이륜자동차 취득세 미 부과	○		137		137	
3	〃	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부적정	○					
4	〃	수입증지 수수료 지연 입금		○				
5	농업분야	농지취득에 따른 농지원부 정리 소홀	○					
6	〃	벼 무논점파 재배농법 지원사업 홍보 소홀		○				
7	〃	2015년도 가축방역사업 업무 소홀	○					
8	사회복지	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소홀		○				
9	건설분야	도룡마을회관 국기봉 설치공사 추진 소홀	○		356	356		
10	〃	마을(백양,중고)운동기구 구매(설치)검사 소홀	○					
11	회계분야	이장수당 지급 업무 소홀		○				
12	〃	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 미 이행	○		90		90	
13	〃	법인신용카드 관리 소홀	○					
14	〃	증빙서류의 원본주의 첨부문서 관리 소홀		○				
15	〃	관외출장 여비지급 증빙자료 누락		○				

VI 지적사항 요약

1. 주민자치센터 운영 소홀

○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연간 운영계획 위원회 심의 미 이행

○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결과 보고서 미 이행

2. 이륜자동차 취득세 미 부과

○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여야 함에도

○ 병영면에서는 6명에게 187,230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.

3. 지역 민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부적정

○ 지역 민방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2014년 미구성, 2015년 1월 14일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였고, 민방위협의회를 구성 하였으면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원에게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수여 하던지 최소한 공문으로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내부결재만 득하고 이를 방치 하였으며

○ 2015년 7월 1일자 신임(허경자) 면장의 부임에 따라 새롭게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구성하지 않음.

○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(편성절차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시 제외자에 대한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.

4. 수입증지 수수료 지연 입금

○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, 그 이외의 곳에서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○ 병영면에서는 2014년 2건/23,700원과 2015년 9건/136,100원에 대해 최저 2일부터 최대 11일까지 수입금을 지연 불입한 사실이 있음.

5. 농지취득에 따른 농지원부 정리 소홀

○ 농지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(농지원부의 작성), 동법 시행규칙 55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규칙 제13조(농지이용실태조사)에 의거 농지이용실태를 조사 하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음에도

○ 병영면에서는 농업경영을 위하여 취득한 4필지('15년 2필지, '16년 2필지)에 대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경작여부를 확인한 후 변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함에도 2016년 3월 현재까지 경작확인을 하지 않아 농지취득자의 농지원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6. 벼 무논점파 재배농업 지원사업 홍보 소홀

○ 2016년에 2015년 전용직파기 공급단지(농가) 및 2016년 신규 재배단지(농가)를 대상으로 벼 무논점파 재배농법 확대를 위해 사업계획 사전 안내 및 리플렛 배부를 통하여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7. 2015년도 가축방역사업 업무 소홀

○ 가축방역 대상농가인 가금 및 우제류 사육 112농가에 대해 전국적으로 소독약품 배정과 방역홍보 및 방역 후「예방접종 실시대장(농가/담당자/접종자 확인) 및 약품공급대장」을 작성 비치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8.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소홀

○ 연령 및 근로능력 등 신상변동 사항에 의한 자격변경 시기에 맞춰 종별변경 조치를 취해야 함에 수급자격의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아 수급권자의 적정 급여 수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9. 도룡마을회관 국기봉 설치공사 추진 소홀

○ 도룡마을회관 국기봉 설치공사시 업체에서 제출한 1인 견적서에 명시된 기초공사로 356천 원이 반영 되어 있으나,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기존 기초를 이용하여 시공 하였는데 감액조치를 취하지 않고 완료보고 후 계약금액 전액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.

10. 마을(백양·중고) 운동기구 구매(설치)검사 소홀

○ 병영면 백양, 중고마을에 3종의 운동기구를 구매·설치 하면서 사업이 완료 되었을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검사에 따른 출장결과보고(사업완료 확인) 등을 하지 않고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납품완료 확인서만 확인하는 등 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11. 이장수당 지급 업무 소홀

○ 이장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2014년 5건, 2015년 6건등 이장수당을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.

12. 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 미 이행

○ 2014년 5월 14일 시행한 면사무소 조리실 공사에 대해서는 8,997,000원×0.025%를 적용하여 220,000원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함에도 매입기준보다 미달된 금액으로 매입하였으며,

○ 2014년 11월 24일과 2015년 5월 14일에 시행한 면사무소 펌프 교체와 조리실공사등 2건/70천 원에 대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지 않는 등 매입기준 적용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13. 법인 신용카드 관리 소홀

○ 2014년부터 2016년 2월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고 회계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변경하지 않는 등 카드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.

14.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첨부문서 관리 소홀

○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"제7장 계산증명"제126조(증빙서류의 원본주의)1항에 의하면 원본에 부치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 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. 라고 규정함.

○ 회계업무와 관련된 지출결의서 작성시 견적서등은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나, 사본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 회계업무 추진에 소홀히 하였음.

15. 관외출장 여비지급 증빙자료 누락

○ 관외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출장복명서 또는 증빙할 수 있는 개인신용카드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5건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함에도 여비를 지급함.